

주주각위

##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

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시 : 2021년 07월 28일 (수요일) 오전 11시 00분

2. 장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평촌디지털엠파이어 411호 (본사 대회의실)

3. 회의 목적사항

나. 부의안건

제1호의안 : 정관변경의 건

제2호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4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 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
- 대리 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
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주주님께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때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07월 13일

주식회사 세니젠 대표이사 박정율



붙임 : 주주총회 참석장

## 주 주 총 회 참 석 장

일 시 : 2021년 7월 28일 (수) 11시

장 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평촌디지털엠파이어 411호  
(본사 대회의실)

주식회사 세니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.

---

주식회사 세니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.

소유주식수 :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주 주 명 :

---

※ 대리인 위임장

대 리 인 명 :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.

위 임 자 : (인)

---



[별첨 1]

■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변경사유
<b>제10조【신주인수권】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</li> <li>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</li> <li>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</li> <li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</li> </ol> </li> </ol>	<b>제10조【신주인수권】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.</li> <li>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.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</li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</li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,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</li> <li>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 ·판매 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</li> <li>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</li> <li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</li> </ol> </li> </ol>	신주인수권의 발행대상 확대
<b>부 칙</b> <b>제1조【시행일】</b> 이 정관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2, 제14조 3항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9조,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	<b>부 칙</b> <b>제1조【시행일】</b> 이 정관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2, 제14조 3항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9조,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	

[별첨 2]

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
1. 부여대상자(명)	해당 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	15
	관계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	-
2. 당해부여 주식 (주)	보통주식	53,100
	기타주식	-
3. 행사조건	행사기간 시작일	2024년 07월 28일
	종료일	2027년 07월 27일
4. 부여방법	보통주식	8,250
	기타주식	-
5. 부여결의 기관		주주총회
6. 부여일자		2021년 07월 28일
7. 부여근거		당사 정관 제11조의 1항, 3항
8.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(주)	보통주식	236,156
	기타주식	-
9. 이사회 결의일(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)		
- 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 (명)	-
	불참 (명)	-
- 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

[대상자별 부여내역]

성명	관계	부여주식 ( 주 )		기타
		보통주	기타	
임직원 15명	임직원	53,100		